

Korean Tax Brief

Update on Current Issues and Trends

2021 년 개정세법

I. 개 요

- 지난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.
- 정부는 개정된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'21년 1월 세법 시행령(안)을 발표하였고, 이는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확정·시행될 예정입니다.
- 삼정KPMG는 오는 17일 '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'를 웹 세미나(Webinar) 형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.

II. 주요 개정내용

1.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: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(조특법 §24 신설 및 §5-25-25의4-25의5-25의7 폐지)

- (현행)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9개*,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(모든 사업용 자산 대상) 등 총 10개 제도 운영
 (*) ①R&D 설비, ②에너지절약 시설, ③환경보전 시설, ④근로자 복지증진 시설, ⑤안전 설비, ⑥생산성 향상 시설, ⑦의약품 품질관리 시설, ⑧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, ⑨5G 이동통신 시설
- (현행)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 유도 → (개편)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: (현행) 열거된 특정시설(Positive 방식) → (개편)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(Negative 방식: 토지·건물, 차량 등 제외*)으로 확대
- 업종별 특성을 감안, 일부 예외 인정(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): (건설업) 포크레인 등 중장비, (도소매·물류업) 창고 등 물류시설, (운수업) 차량·운반구·선박, (관광숙박업)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
-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부여

- ✓ (기본공제) 당해 연도 투자액 × 기본공제율 (대기업 1%/중견 3%/중소 10%)
- ✓ 신성장기술*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 (대기업 3%/중견 5%/중소 12%)
- ✓ (추가공제) [당해 연도 투자액 - 직전 3년 평균 투자액] × 추가 공제율 (3%),

다만, 추가공제액 한도: 기본공제액의 200%

(*) 12 대 신산업 223 개 기술 ①미래형 자동차, ②지능정보, ③차세대 SW 및 보안, ④콘텐츠,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, ⑥차세대 방송통신, ⑦바이오 헬스, ⑧에너지 신산업·환경, ⑨융복합 소재, ⑩로봇, ⑪항공·우주, ⑫첨단소재부품장비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□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</p> <p>○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(§5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3">중소기업</th> <th colspan="3">중견기업</th> </tr> <tr> <th>위기 지역</th> <th>신규 상장</th> <th>일반</th> <th>위기 지역</th> <th>신규 상장</th> <th>일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제율</td> <td>10%</td> <td>4%</td> <td>3%</td> <td>5%</td> <td>4%</td> <td>2% (수도권 1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(§25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중소기업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대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</td> <td>7%</td> <td>3%</td> <td>1%</td> </tr> <tr> <td>② 에너지절약시설</td> <td>7%</td> <td>3%</td> <td>1%</td> </tr> <tr> <td>③ 환경보전시설</td> <td>10%</td> <td>5%</td> <td>3%</td> </tr> <tr> <td>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</td> <td>10%</td> <td>5%</td> <td>3%</td> </tr> <tr> <td>⑤ 안전시설</td> <td>10%</td> <td>5%</td> <td>1%</td> </tr> <tr> <td>⑥ 생산성향상시설</td> <td>7%/10%</td> <td>3%/5%</td> <td>1%/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⑦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(§25 의 4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중소기업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대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제율</td> <td>6%</td> <td>3%</td> <td>1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(§25 의 5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중소기업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대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제율</td> <td>10%</td> <td>7%</td> <td>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중소기업			중견기업			위기 지역	신규 상장	일반	위기 지역	신규 상장	일반	공제율	10%	4%	3%	5%	4%	2% (수도권 1%)	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	7%	3%	1%	② 에너지절약시설	7%	3%	1%	③ 환경보전시설	10%	5%	3%	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	10%	5%	3%	⑤ 안전시설	10%	5%	1%	⑥ 생산성향상시설	7%/10%	3%/5%	1%/2%	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공제율	6%	3%	1%	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공제율	10%	7%	5%	<p>□ "통합투자세액공제"로 통합·단순화(§24 신설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적용대상) 모든 개인사업자·법인(소비성 서비스업, 부동산임대업 등* 일부 제외) ▪ (공제대상)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, 일부 자산 제외 (현행: 포지티브 ⇒ 개정: 네거티브 방식) ▪ 토지, 건물, 구축물, 차량, 운반구, 선박, 항공기 등의 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, 일부 업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세액공제 허용 <i>(예시) (건설업) 포크레인 등 중장비, (도소매·물류업) 창고 등 물류시설, (운수업) 차량, 운반구, 선박, (관광숙박업)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</i> ▪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, 일부 예외 인정 <i>(예시) 중소기업의 대체투자,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.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, 시행규칙에서 규정</i> ▪ (공제율) 당기분 기본공제(A) + 투자증가분 추가공제(B) ▪ (기본공제(A)) 당해 연도 투자액 × 기본공제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일반 투자분: 중소 10%, 중견 3%, 대 1% ✓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*: 중소 12%, 중견 5%, 대 3% <p>(*) 12 대 분야, 223 개 기술의 사업화시설 (조특칙 별표 8 의 8)</p>
구 분		중소기업			중견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위기 지역	신규 상장	일반	위기 지역	신규 상장	일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율	10%	4%	3%	5%	4%	2% (수도권 1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	7%	3%	1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에너지절약시설	7%	3%	1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환경보전시설	10%	5%	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	10%	5%	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안전시설	10%	5%	1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생산성향상시설	7%/10%	3%/5%	1%/2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율	6%	3%	1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율	10%	7%	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<p>㉠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투자세액공제 (§25 의 7)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추가공제(B)) [당해 연도 투자액 - 직전 3년 평균 투자액] × 추가공제율(모든 기업 3%) ▪ 추가공제액 한도: 기본공제액의 200%
구 분	모든 기업	
공제율	최대 3% = 2% + 최대 1% (전년대비 고용증가율 × 1/5)	

<개정이유>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

다만, '20년-'21년 투자분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적용 허용. 법인 전체적으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 가능
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

2.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요건 완화 (조특법 §25의5, 조특령 §22의9)

- (현행)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필요
 - ① 신성장·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
 - ② 전체 R&D 비용이 매출액의 2% 이상
 - ③ 전체 R&D 비용 중 신성장·원천기술 R&D 비용이 10% 이상
 - ④ 상시근로자 수 유지
- (개정) ②~④ 요건 폐지

<개정이유>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 장려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

3.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·분석 비용을 R&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(조특령 별표6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R&D 비용 세액공제 (위탁·공동연구개발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과학기술·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<p><추 가></p>	<p>□ R&D 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(위탁·공동연구개발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등) ▪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·분석을 위해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'산업재산권 진단기관'에 지출한 비용

<개정이유> 효율적인 R&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

4. 「조특법」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(조특법 §144①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(5년~10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대상)납부세액이 없거나,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▪ (이월공제기간) 5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창업 초기 중소기업 (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)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: 7년 · R&D 비용 세액공제: 10년 ✓ 신성장·원천기술 R&D 비용 세액공제: 10년 	<input type="checkbox"/> 「조특법」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동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 margin: 10px auto; text-align: center; line-height: 20px;">10년</div>

<개정이유>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
5.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(법인법 §57, 소득법 §57)

-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(현행)에서 10년(개정)으로 확대
- 이월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
- 미공제액 소멸(현행) → 이월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(개정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아래의 한도에서 공제 $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국외원천소득}}{\text{과세표준}}$ ▪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: 5년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5년 → 10년 ✓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

<개정이유>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법인세, 소득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(5년)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
6.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(법인법 §13, §76의13, 소득법 §45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결손금 이월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이월공제기간) 10년 ▪ (공제한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일반기업: 소득의 60% ✓ 중소기업, 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: 소득의 100% 	<input type="checkbox"/>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이월공제기간) 10년 → 15년 ▪ (좌 동)

<개정이유>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

7.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29의4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 증대세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적용요건)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>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* *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▪ (세액공제)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20%(중견 10%, 대 5%) ▪ (적용기한) '20.12.31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2년 연장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100px; margin: 5px;"></div>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2.12.31.

<개정이유>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

8.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29의3①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경력단절여성 요건) (i)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, (ii) 결혼·임신·출산·육아·자녀교육 사유로 퇴직, (iii) 퇴직 후 3~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▪ (세액공제액)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% (중견기업의 경우 15%) ▪ (적용기한) '20.12.31.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2년 연장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100px; margin: 5px;"></div>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2.12.31.

<개정이유>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

9. 중소·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(조특법 §30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중소·중견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요건) '19.6.30.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'20. 1. 1. ~ 12.31.까지 정규직 전환 ▪ (공제액) 전환인원 × 1,000 만원 (중견기업은 700 만 원) ▪ (사후관리)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 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▪ (적용기한) '20.12.31. 	<p>□ 적용기한 1 년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요건) '20.6.30.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'21.1.1.~12.31.까지 정규직 전환 ▪ (좌 등) ▪ 추징금액 완화 「세액공제액 + 이자상당액」 → 세액공제액 ▪ '21.12.31.

<개정이유>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
 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

10. 중소·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(조특법 §29의3②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중소·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공제요건) 근로자가 6 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▪ (세액공제액) 복직 후 1 년간 인건비의 10%(중견 5%) ▪ (사후관리) 복직한 날부터 1 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▪ (적용기한) '20.12.31 	<p>□ 적용기한 2 년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등) ▪ 복직 후 1 년간 인건비의 30% (중견 15%) ▪ 추징금액 완화 「세액공제액 + 이자상당액」 → 세액공제액 ▪ '22.12.31.

<개정이유> 중소·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속 지원
 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

11.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(조특법 §29의7)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
<p>□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적용요건)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▪ (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) 청년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대공제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소기업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견기업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기업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도권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년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1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2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타 상시근로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7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5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공제기간) 대기업 2년, 중소/중견기업 3년 ▪ (적용기한) '21.12.31. 	구 분	중소기업		중견기업	대기업	수도권	지방	청년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	1,100	1,200	800	400	기타 상시근로자	700	770	450	-	<p>□ 고령자 고용 증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동) ▪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(60세 이상) 추가, 고령자 1인당 세액공제액 350~430만 원 인상효과 발생 ▪ (좌 동) ▪ (좌 동)
구 분		중소기업				중견기업	대기업											
	수도권	지방																
청년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	1,100	1,200	800	400														
기타 상시근로자	700	770	450	-														

<개정이유> 고령자 고용 지원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

12. 일몰기한 경과로 폐지된 조세특례

-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
-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
-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
- 기타(생략)

13.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(조특법 §100의32, 조특령 §100의32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과세방식) A(투자포함형), B(투자제외형) 중 선택 ▪ A: [당기 소득 × 65% - (투자 + 임금증가 + 상생협력)] × 20% ▪ B: [당기 소득 × 15% - (임금증가+상생)] × 20% <p>Note: 가중치: (투자) 1 (임금) 2~3 (상생) 3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환류 대상범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(투자)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✓ (임금증가) 총 급여 7,000 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✓ (상생협력)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▪ (초과 환류액 이월기간(note)) 1 년 <p>Note: 의무 환류액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미 환류소득에서 차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적용기한) '20.12.31. 	<p>□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A(투자포함형) 계산식 개정 ▪ A: [당기 소득 × 70% - (투자+임금증가+상생협력)] × 20% ▪ B (좌 동) ▪ 임금증가 대상 확대 ▪ (좌 동) ▪ 총 급여 8,000 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▪ (좌 동) ▪ 초과 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: 1 년 → 2 년 ▪ '22.12.31.

<개정이유>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

<적용시기> (i) (기업소득·임금증가)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,

(ii) (초과 환류액 이월) '21.1.1. 이후 신고하는 초과 환류액부터 적용

14.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(법인령 §19, 소득령 §55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광고선전 목적 기증한 물품 구입비용 세무처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불특정 다수인 대상) 광고선전비, 전액 손금산입 ▪ (특정인 대상) 연간 3 만원 이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 처리, 초과분은 접대비 처리 ▪ 연간 기증액 계산 시 개당 1 만원이하 물품 제외 	<p>□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동) ▪ (특정인 대상) 연간 3 만 원 → 5 만 원 ▪ 개당 1 만원 → 개당 3 만원

<개정이유>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15.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(법인령 §41, 소득령 §83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적격증빙(note)이 요구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Note: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경조금) 20 만 원 ▪ (그 외) 1 만 원 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액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동) ▪ (그 외) 1 만 원 → 3 만 원

<개정이유>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16.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(부가령 §19의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, 다음의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작업복·작업모·작업화 ▪ 직장체육·문화와 관련된 재화 ▪ 경조사(note)와 관련된 재화로서 1 인당 연간 10 만 원 이하 재화 <i>Note: 설날, 추석, 창립기념일, 생일 등 포함</i> 	<input type="checkbox"/>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정 명확화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경조사를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 인당 연간 10 만 원 이하 재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경조사(결혼, 회갑 등)와 관련된 재화 ② 명절·기념일 등(note)과 관련된 재화 <i>Note: 설날, 추석, 창립기념일, 생일 등</i> ▪ 연간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봄

<개정이유>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및 소비 진작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17.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(조특령 §16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대상) 외국인 기술자·연구원 ▪ 엔지니어링 기술(note) 도입 계약 (계약금액 \$30 만 이상)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<i>Note:</i> 기계, 선박, 항공, 우주, 전기통신, 화학 등 ▪ ❶& ❷의 요건을 갖춘 자 ▪ ❶ (인력요건) 연구원 ▪ ❷ (취업기관) 외국인투자기업 R&D 센터(note) <i>Note:</i> 외국인 지분율이 30% 이상 등 ▪ (감면 내용) (i)5 년간 소득세 50% 감면, (ii) 소재·부품·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 년간 70%, 2 년간 50% 감면 ▪ (적용기한) '21.12.31. /소재·부품·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'22.12.31. 	<p>□ 제도 재설계: 인력요건은 강화하되,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대상) 외국인 기술자·연구원 ▪ (좌 등) ▪ ❶& ❷의 요건을 갖춘 자 ▪ ❶ (인력요건 강화)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,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 년 이상 (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 년 이상) 근무한 연구원 ▪ ❷ (취업기관 확대) 국내 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전담부서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<p>(좌 등)</p>

<개정이유>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유도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18.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(소득법 §55①)

현 행		개 정 안	
□ 소득세 과세표준 · 세율		□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	
과세표준	세율(%)	과세표준	세율(%)
1,200 만 원 이하	6	1,200 만 원 이하	6
1,200 ~ 4,600 만 원	15	1,200 ~ 4,600 만 원	15
4,600 ~ 8,800 만 원	24	4,600 ~ 8,800 만 원	24
8,800 ~ 1 억 5 천만 원	35	8,800 ~ 1 억 5 천만 원	35
1.5 ~ 3 억 원	38	1.5 ~ 3 억 원	38
3 ~ 5 억 원	40	3 ~ 5 억 원	40
5 억 원 초과	42	5 ~ 10 억 원	42
		10 억 원 초과	45

<개정이유>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19. 비거주자 ·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(법인법 §92 · §93 · §98, 소득법 §119 · §126 · §156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□ (과세대상) 비거주자 · 외국법인이 가상자산(예, 비트코인 등)을 양도 ·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상자산 사업자*가 보관·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* 「특정금융정보법」 제 2 조제 1 호하목 <p>□ (소득구분) 기타소득</p> <p>□ (과세방법) 원천징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원천징수 의무자) 소득을 지급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양도 · 대여 · 인출시 : 가상자산 사업자 ▪ (원천징수 금액) Min[양도가액×10%, (양도가액-취득가액 등)×20%] ▪ (원천징수 시기) 소득을 지급하는 때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·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때 포함 ▪ (납부시기) 가상자산 또는 원화(양도·대여 대가) 인출 시 인출일의 다음 달 10 일까지 ▪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·면제 적용 가능 (비과세·면제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 필요)
--	---

<개정이유>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'21.10.1. 이후 양도·대여·인출하는 분부터 적용

20.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(소득법 §164의4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출의무 정보: 회원정보, 거래일자 등 ▪ 제출주기: 분기별/연도별 제출

<개정이유>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실효성 확보

<적용시기> '22.1.1.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21.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(국조법 §34②③, 국조령 §49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은행 계좌, 증권계좌, 파생상품 계좌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대상 계좌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동) ▪ 「특정금융정보법」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
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금융계좌 취급 해외금융회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외 소재하는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·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금융회사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동)

<추 가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 특정금융정보법」상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와 유사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
-------	---

<개정이유>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 확보

<적용시기> '22.1.1.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

22.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(법인법 §24, 조특법 §88의4)

현 행	개 정 안						
<p>□ 기부금의 범위 및 한도액 계산</p> <p>① 일반적인 기부금* 정의 *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</p> <p>②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손금산입 한도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법정기부금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기준소득금액-이월결손금) × 50%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지정기부금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] × 1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③ 법정기부금의 범위 - 국가, 지자체 등 기부금</p> <p>④ 지정기부금의 범위 - 사회복지·문화·교육·종교 등 기부금</p>	구 분	손금산입 한도액	1. 법정기부금	(기준소득금액-이월결손금) × 50%	2. 지정기부금	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] × 10%	<p>□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</p> <p>① (좌 등)</p> <p>② 50% 한도 기부금 - 범위:(현행 법정기부금과 동일) - 한도액 계산 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(기준소득금액의 60% 한도)] × 50%</p> <p>③ 10% 한도 기부금 - 범위 : (현행 지정기부금과 동일) - 한도액 계산 [기준소득금액-이월결손금 (한도: 기준소득금액* 60%) - 50%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] × 10%</p>
구 분	손금산입 한도액						
1. 법정기부금	(기준소득금액-이월결손금) × 50%						
2. 지정기부금	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] × 10%						

<개정이유>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23. 합병·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(법인법 §45·46의4, 법인령 §81·83)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적격합병·분할시 세무조정 사항은 합병법인, 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됨</p>	<p>□ 합병법인,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합병·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합병·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<p>□ 피합병법인,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</p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내에서 이월 잔여기간동안 손금산입 ▪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
--	--

<개정이유> 합병·분할 이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합병·분할하는 분부터 적용

24. 지출증명서류합계표(적격증빙) 작성·보관대상자 축소 (법인령 §158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·보관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 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·보관대상자 축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0억 원 이상 → 30억 원 이상

<개정이유>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25.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·명확화 (국기령 §63의13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▪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·경정하는 사유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정신고 안내 ▪ 과세전적부심사 안내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·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동) ▪ 근거법령 및 조항,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 margin: 5px 0;">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산세 종류, 금액 및 산출근거

<개정이유>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

26.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(부가법 §20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용역의 공급장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▪ 시설물·권리 등 ▪ 국제운송용역의 사업자가 비거주자·외국법인인 경우 여객탑승 또는 화물적재 장소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50px; height: 50px; margin: 0 auto;">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·주소지·거소지

<개정이유> 전자적 용역 공급장소 명확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'21.1.1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27.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(법인법 §19의2, 법인령 §19의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채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▪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	<input type="checkbox"/>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등) ▪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

<개정이유>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

28.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136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추가한도) 일반접대비의 20% ▪ (적용기한) '20.12.31.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2년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등) ▪ '22.12.31.

<개정이유>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및 소비활성화 지원

29. 외국법인·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(법인법 §120의2, 소득법 §164의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제출의무자)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·비거주자에 지급하는 자 <추 가> ▪ (제출처)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▪ (제출기한)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 	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동) ▪ 주식상장시 기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

<개정이유> 납세절차 간소화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30.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 (법인법 §75의7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	<input type="checkbox"/> 부과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(내국법인 + <u>외국법인</u>) ✓ 외국법인: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포함

<개정이유>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확보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31.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(국조법 §2①8호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계의 정의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% 이상 직·간접 소유 ② 제 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% 이상 직·간접 소유 	<input type="checkbox"/> 제 3자 소유지분 계산시 친족 관계 포함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

<p><신 설></p> <p>③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(출자, 재화·용역거래, 자금대여 등)가 있고,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</p> <p>④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(출자, 재화·용역거래, 자금대여 등)가 있고, 제 3 자가 양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 3 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제 3 자의 직계존비속·배우자 등 친족관계*에 있는 자가 직·간접소유하는주식포함 (*) 「국세기본법」 §2 20 호 가목 <p>(좌 등)</p>
--	---

<개정이유> 조세회피 방지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32.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(CFC)에서 수동소득 범위 확대 (국조법 §17의3②)

- Controlled Foreign Company: 저세율(15%이하) 국가의 자회사에 유보한 소득을 국내 모법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동소득 특례의 수동소득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동소득 특례: 능동적 사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도 수동소득이 매출의 5% 이상인 경우 해당 소득만 CFC 적용 <p>①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</p> <p>② 지식재산권의 제공</p> <p>③ 선박·항공기·장비의 임대</p> <p>④ 투자신탁·기금에 대한 투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대상 수동소득 범위 확대</p> <p>(좌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① ~ ④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매각손익 ▪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선박·항공기·장비의 매각손익은 제외

<개정이유>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33.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(국조법 §11, 국조령 §1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통합·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* 제출 같음 ※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면제 확인서 제출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제거래명세서 + 요약손익계산서 ⇨ <u>소득세·법인세 확정신고시</u> ▪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⇨ <u>소득세·법인세 확정신고시</u> ▪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⇨ <u>매년 6월말까지</u> ▪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⇨ <u>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</u> ▪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⇨ <u>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</u> 	<input type="checkbox"/> 통합·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※ 면제 확인서 제출 불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시기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▪ (좌 등) ▪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

<개정이유>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부담 완화
 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34.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(국기령 §43의3①5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착오납부, 이중납부, 납부 후 신고·부과의 경정·취소로 환급하는 경우: 납부일 ▪ 환급세액의 신고·경정·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: 신고일부터 30일 ▪ 다만,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: 경정청구일 	<input type="checkbox"/>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부터 기산하도록 기산일 조정 (좌 등) <삭 제>

<개정이유> 납세자 권익 제고
 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35.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(APA*) 소급적용기간 확대 (국조법 §6③)

* Advance Pricing Agreement: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과세당국이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(APA) 소급적용 허용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(note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승인 대상기간 직전 5년 이내 Note: 계약상대국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상호합의 ▪ 일방적 사전승인(note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승인대상기간 직전 3년 이내 Note: 우리나라 국세청 단독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	<input type="checkbox"/> 소급적용 허용기간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5년 → 7년 ✓ 3년 → 5년

<개정이유>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36.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 (국조법 §22②1호, §23④)

- (현행)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,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될 수 없고 진행 중이던 상호합의는 종료됨
- (개정)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'상대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기업의 세부담액을 상대국 과세관청이 대응조정해 주는 경우'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진행 중이던 상호합의는 자동 종료되지 아니함→ 상호합의 절차의 실효성 향상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상호합의 개시* *계약상대국간 조세조정등이 필요한 경우 개시신청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상호합의 개시 의무 배제 사유 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당국의 상호합의 개시 의무 발생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정*의 경우 상호합의 개시 의무 부여 * 어느 한 국가의 과세관청에 의해 행해진 1차 조정에 대응하여 상대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기업의 세부담액을 상대국 과세관청이 조정

<p>① 법원의 확정판결</p> <p>② 신청자의 무자격</p> <p>③ 조세회피 목적의 신청</p> <p>④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경과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상호합의절차 종료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: 확정판결일 ▪ 신청인이 개시신청을 철회하는 경우: 신청철회일 	<p>① <u>법원의 확정판결 (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)</u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②~④ (좌 등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정의 경우 상호합의 자동종료 배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(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): 확정판결일 ▪ (좌 등)
---	---

<개정이유>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개시요청을 하거나 상호합의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분부터 적용

37. 법원판결과 상호합의 이행간 충돌방지 규정 신설 (국조법 §27)

- (현행) 우리 세무당국이 상대국의 당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합의와는 별개로 진행중인 불복쟁송은 계속될 수 있음
- (개정) 상대국과의 상호합의 이행 요건으로서, '상호합의 개시 신청을 한 납세자가 상호합의를 수락하면서 해당 쟁송을 취하하도록 하는 규정' 신설 예정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상호합의절차 상 상대 체약국과의 합의 이행요건 (①② 동시 충족)</p> <p>① 상호합의 개시 신청을 한 납세자의 상호합의 수락</p> <p>② 상호합의와 불복쟁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납세자의 해당 쟁송 취하</p>

<개정이유> 상호합의의 이행력 제고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상호합의를 이행하는 분부터 적용

38.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법상 위임근거 신설 (국조법 §22⑥)

- 상호합의 개시 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 상호합의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양 당사국이 선정한 각 1인과 제3자(총3인)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통하여 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예정
- 다만,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해서는 조세조약 개정을 통한 중재제도 반영 필요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재*의 세법상 근거 신설 * 권한있는 당국이 선정한 각 1 인과 제 3 자(총 3 인)로 구성된 중재인단에 의한 독립적 분쟁해결 방식, 상호합의 절차에 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시요건) 상호합의 개시일 이후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 ▪ (시행요건) 신청 대상시기, 신청대상 과세처분 범위, 중재인 구성, 의사결정 방법, 중재 결정의 효력 등을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과 합의(조세조약 제·개정 사항) ▪ (구체적 절차 위임) 중재 신청방법, 중재인 임명,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

<개정이유> 조세조약 상 중재 도입을 위한 세법상 근거 마련

39.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(법인령 §10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원칙)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% ▪ (예외)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✓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등) ▪ 대상 법인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·구조조정업무를 행하는 공공기관*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공공기관 규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✓ (좌 등)</p>

<개정이유> 실질적 구조조정 법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40.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 (법인령 §19의2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, 미수금, 어음, 수표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손 사유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등) ▪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*이 확인된 경우 <p>*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사유 규정</p>

<개정이유> 해외채권의 대손처리 시 납세협력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

41.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(법인법 §75의7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대상)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▪ (가산세) 지급금액 × 0.5% <p>*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% 감면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율 50% 인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등) ▪ (가산세) 지급금액 × 0.25% <p>* (좌 등)</p>

<개정이유>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신고·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42.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 (국조령 §50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과소자본세제* 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부인, 배당으로 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업종별 배수) 금융업: 6 배, 비금융업: 2 배 	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출자금액과 차입금의 배분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등)

<p>< 신 설 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공통 출자금·차입금 업종별 배부 의무화)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은 영업이익*을 기준으로 배분 <p>*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수입금액 또는 손금액</p>
----------------------	--

<개정이유>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합리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43.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(APA)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(국조령 안 §26④, 32④)

현 행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 및 연례보고서* 제출부수</p> <p>* 사전승인 결과 점검을 위해 매해 제출(과세연도 종료 12개월 이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사전승인 (사전승인 신청서) 2 부 ▪ (사전승인 연례보고서) 4 부 	<p><삭 제></p>

<개정이유> 납세편의 제고(전자적 제출이 일반화된 점 감안)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사전승인을 신청하거나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44.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(APA) 수정신고·경정청구 기간 일원화 (국조령 안 §31④)

현 행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정신고·경정청구 기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쌍방 APA: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▪ 일방 APA: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정신고·경정청구 기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쌍방·일방 APA: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

<개정이유>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

<적용시기> 시행일 이후 사전승인 통지서를 제출 받는 분부터 적용

45.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(조특법 §126의2)

현 행	개 정																		
<p>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공제대상)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 ▪ (공제율) 결제수단·대사별 차등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신용카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%</td> </tr> <tr> <td>2.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%</td> </tr> <tr> <td>3. 도서·공연·미술관 등 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%</td> </tr> <tr> <td>4. 전통시장·대중교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*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공제한도) 급여수준별 차등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급여 기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천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만원</td> </tr> <tr> <td>7천만원 ~ 1.2억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0만원</td> </tr> <tr> <td>1.2억원 초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추가한도) 항목별* 100만원 *도서·공연·미술관 등 사용분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사용분 ▪ (적용기한) '22.12.31 	구분	공제율	1. 신용카드	15%	2.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	30%	3. 도서·공연·미술관 등 *	30%	4. 전통시장·대중교통	40%	총급여 기준	공제율	7천만원 이하	300만원	7천만원 ~ 1.2억원	250만원	1.2억원 초과	200만원	<p>□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등) <p>✓ 21년 소비금액* 중 '20년 대비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: 10%</p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* 1~4 금액의 합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등) <p>✓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등)
구분	공제율																		
1. 신용카드	15%																		
2.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	30%																		
3. 도서·공연·미술관 등 *	30%																		
4. 전통시장·대중교통	40%																		
총급여 기준	공제율																		
7천만원 이하	300만원																		
7천만원 ~ 1.2억원	250만원																		
1.2억원 초과	200만원																		

<개정이유> 소비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21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46.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(조특법 §96의3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세액공제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대료 인하액의 50% 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율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50% → 70% ▪ 다만,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*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% 세액공제율 유지 *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

<개정이유>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 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

47.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 (조특법 §29의7)

현 행	개 정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공제금액)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 연간 400~1,200만원 세액공제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중소기업</th> <th rowspan="2">중견기업</th> <th rowspan="2">대기업</th> </tr> <tr> <th>수도권</th> <th>지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</td> <td>1,100</td> <td>1,200</td> <td>800</td> <td>400</td> </tr> <tr> <td>기타 상시근로자</td> <td>700</td> <td>770</td> <td>450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공제기간) 대기업 2년 중소 중견 3년 ▪ (사후관리)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1) 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+ 2)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미적용 	구분	중소기업		중견기업	대기업	수도권	지방	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	1,100	1,200	800	400	기타 상시근로자	700	770	450	-	<input type="checkbox"/> '20년 고용감소의 경우 사후관리 예외를 인정하여 지속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동) ▪ (좌 동) ▪ (좌 동) ▪ '20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
구분		중소기업				중견기업	대기업											
	수도권	지방																
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	1,100	1,200	800	400														
기타 상시근로자	700	770	450	-														

<p>< 신 설 ></p>	<p>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 지원*</p> <p>*1)감소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의무 면제 + 2) 잔여기간동안 세액 공제 지속적용</p>
----------------------	---

<개정이유> 코로나 19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48.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(소득법 §164, §164의3)

현 행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명세서* 등 제출주기</p> <p>* 소득지급자(원천징수의무자)가 소득지급 사실 (소득자 인적사항, 소득금액 등)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: 매 분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(원칙)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✓ (예외)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*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: 매 반기</p> <p>*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(예: 보험모집인, 학습지 방문강사, 방문판매원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(원칙)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✓ (예외)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: 매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(원칙)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✓ (예외)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: 매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(원칙)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✓ (예외)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

<개정이유>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

<적용시기> '21.7.1.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(‘21.6.30.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)

49.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(소득법 §81의11, 법인법 §75의7)

현 행	개 정																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산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%</td> </tr> <tr> <td>②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지연제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.5%</td> </tr> <tr> <td>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.25% (지연제출시 0.125%) 가산세율 적용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구 분	가산세율	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	1%	②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지연제출	0.5%	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	1%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산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.25%</td> </tr> <tr> <td>②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* 지연제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.125%</td> </tr> <tr> <td>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.2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→ 1개월 개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*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</p> <p>*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 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(대상: '21.7~'22.6 월 지급한 소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▪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* 등이 일정비율** 이하시 가산세 면제 <p>* 소득자의 인적사항,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</p> <p>**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</p>	구 분	가산세율	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	0.25%	②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* 지연제출	0.125%	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	0.25%
구 분	가산세율																
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	1%																
②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지연제출	0.5%																
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	1%																
구 분	가산세율																
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	0.25%																
②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* 지연제출	0.125%																
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	0.25%																

<개정이유>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**가산세 부담 경감**

<적용시기> '21.7.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(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)

50. 과세자료 제출 협조 주기 단축 (소득법 §173)

현 행	개 정
<p>□ 과세자료 제출 협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제출자)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하는 자 *대리운전용역, 소포배달용역, 골프장 경기보조용역 등 ▪ (제출내용)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* *인적사항, 용역제공 기간 및 용역 제공 대가 등 ▪ (제출주기) 매년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✓ 	<p>□ 과세자료 제출협조 주기 단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좌 동) ▪ (좌 동) ▪ (제출주기) 매 분기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

<개정이유>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

<적용시기> '21.7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(‘21.7.30.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)